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
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1994. 4. 12.
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4. 3. 24.
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 일자 : 1994. 4. 1

다. 상정 일자 : 제22회 임시회 제1차
위원회(94. 4. 12.)상정, 의결.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세무1과장

최영명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
철도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고유업무에
사용하는 토지, 건축물 및 사업소세
등에 대하여 마포구 구세의 과세를
면제하여 공공사업을 촉진시키고자 본
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구세
과세면제(안, 제2조 제5호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의원 김
전재)

- 동 조례안은 지방 공기업법의 규정에
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설
립됨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
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
물등에 부과하는 구세를 면제하여 공
공사업을 촉진코자하는 것임.

-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조 및 제9
조 등에 근거한 개정으로 특이 사항
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질문(윤동현 위원) : 도시 철도 공사가 제2기 지하철 공사를 말하는 것인가?
- 답변(최영명 세무1과장) : 그렇습니다.
- 질문(김유현 의원) : 마포구 관내에도 해당되는 토지, 건물이 있는가?
- 답변(최영명 세무1과장) : 앞으로 제2기 지하철이 완공되면 있을 것입니다.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
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8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 3. 24

제출자 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철
도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고유업무에 사
용하는 토지, 건축물 및 사업소세등에
대하여 마포구 구세의 과세를 면제하여
공공사업을 촉진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
정코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구세과
세면제(안 제2조 제5호)

3. 개정근거

○ 지방세법(1994. 1. 7 법률 제4720호)

제2조, 제3조 및 제9조

4. 개정조례(안) : 별첨

5. 예산조치 필요성 : 불필요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
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
에관한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. 제2조에

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적용례) 이 조례 시행전에 남세의무가 성립한 구세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남세의무자 성립한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과세면제)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음 각호의 지방공사 및 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,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(재산할)를 면제하고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(종업원할)를 면제한다. 다만, 총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민간출자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민간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, 골프장,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제2조(과세면제) (현행과 같음)
1.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	1. (현행과 같음)
2.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	2. (현행과 같음)
3.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	3. (현행과 같음)
4.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<u>(신설)</u>	4. (현행과 같음) 5.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